

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‘방한대 예비안전기준’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*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.

* 부직포 : 천연·화학·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하여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,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됨.

-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또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가 사용되고 있어,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.

* 나노필터 : 100nm(1천만분의 1m, 머리카락 대비 1백분의 1굵기)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

* DMF, DMAc :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, 생식독성, 간 손상,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냄.

- 또한,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,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(KF 마스크)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임.

- 이에 따라,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*(20.6월~8월), 전문가(식품의약품안전처, 시험인증기관** 등)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음.

*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 검출

** 마스크 시험기관 : KOTITI, KATRI, FMI, KCL 등

- 다음에 해당하는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(DMF, DMAc) 기준치(5 mg/kg)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음.

① 나노필터 사용 부직포 마스크

② 마스크 제조과정 중 유기용제를 사용한 부직포 마스크

* 부직포로 구성된 모든 부위(안감, 중간층, 겉감)에 적용됨.

- 아울러, 마스크 제품명에 '가정용 섬유제품(방한대)'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(KF 마스크)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하였음.
- 또한,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,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방법*과 취급상 주의사항**도 표시하도록 함.

*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 제조방법 명시

**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"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"으로 표시

○ **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됨.**

-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며,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·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임.
-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* 국표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 → 안전기준열람 → 생활용품안전기준 → 방한대 예비안전기준

◆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0. 11. 09.)

[첨부] 「방한대 예비안전기준」 개요

□ 적용대상

-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
- * 미세먼지/유해물질/비말 차단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



□ 유해물질 안전요건

| 유해물질명 | 기준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포름알데히드 | 75 mg/kg 이하 |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|
| 아릴아민 | 30 mg/kg 이하 | |
| pH | 4.0 ~ 7.0 | |
|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| 5 mg/kg 이하 |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추가 안전요건 |
|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 | 5 mg/kg 이하 | |

* 단,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스펀 본드(spun-bonded), 멜트 블로운(melt-blown) 및 스펀 본드와 멜트 블로운이 결합된 복합부직포에 대해서는 DMF 및 DMAc 기준치를 적용하지 않음.

□ 표시사항

- ✓ 품명 가정용 섬유제품(방한대)으로 표기
- ✓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안감, 중간층, 겉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.
- 단,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(예시 :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)을 표기하여야 함.
- ✓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✓ 제조국명
- ✓ 제조년월
- ✓ 치수
- ✓ 취급상 주의사항 :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“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”으로 표시하여야 함.
- ✓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
□ 일반 부직포 마스크(방한대)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의무사항

- 해당 제품이 ‘방한대 예비안전기준’ 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*을 확인한 후, KC마크 없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.

* ① 원자재(염료, 방수가공제 등)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, ② 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사용, ③ 민간자율인증,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